

1973년 韓國法史學會가 창립된지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본 호에 이르기까지 9권째의 학회지가 발간되었고 여러 차례의 研究發表도 있었지만 한국의 法學, 歷史學과 社會科學 일반에 의미있는 함축을 줄 수 있는 學會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일신되어야 할 면을 많이 남기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인접 과학에서의 활발한 연구성과와 더불어 法學界 내부에서의 반성의 소리도 적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法史學界의 분발을 촉구하는 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외적 요청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인원의 부족과 法學者들의 안이한 태도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창립 당시의 問題意識과 열정을 되새겨 젊은 研究者들의 분발을 북돋우기 위해서 創立趣旨文과 會則을 다시 한번 게재한다.

會 報

創 立 學 會

韓國法制史와 西洋 및 東洋法制史에 關한 研究團體인 法制史學會를 만들어야겠다는 論議는 相當히 오래전부터 胎動하고 있었다. 그러나 具體화된 것은 1972年 末頃이며 韓國法學院 Korean Legal Center(서울地方法院內에 있는 韓國 判檢事 辯護士 및 法學教授의 綜合的인 法曹人 legal profession團體) 안에는 民事法學會 刑事法學會 國際法學會等 7個研究團體가 있는데 法制史學會도 研究團體의 하나로 韓國法學院에 設置할 必要가 있다고 韓國法學院長 梁准模博士와 서울大 金致善博士等이 提唱하여 發起人으로 梁院長이 서울大法大 金曾漢 金致善 朴秉濠 高麗大法大 玄勝鍾(委任) 法制處 尹載秀 建國大學校 宋斗用 國民大學 李鍾恒, 辯護士 田鳳德等을 1973年 2月 10日 正午에 法學院에 召集함으로써 韓國法學院 傘下의 法制史學會의 組織의 發足を 보게 되었다.

當日 發起人會에서 法制史研究團體의 名稱을 「韓國法史學會」로 假稱하기로 決定하고 會則案의 作成을 서울大法大 朴秉濠教授에게 一任하여 來3月 3日 午後 3時 韓國法學院會議室에서 開催되는 總會에 附議할 것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였다.

創立總會에는 韓國法學院의 所屬會員으로서 全國法科系大學에서 40餘名の 法史學者들이 모였고 梁法學院長의 法史學會設立의 趣旨와 經過의 說明이 있는 後 臨時議長으로 田鳳德博士가 指名되어 會則案을 審議하여 確定짓고 任員選舉에 들어가 理事會會長에 田鳳德, 理事에 梁准模 金曾漢 朴元善 玄勝鍾 姜周鎮 崔海泰 金容旭 金炳模 金致善 李鍾恒 宋斗用 朴光緒, 監事에 丘秉期 尹載秀, 幹事에 朴秉濠의 各位를 選任하여 韓國法史學會의 組織을 完了한 것이다. 發起文과 會則은 다음과 같다.